안전투자 혁신사업 착수금 신청 절차 안내

○ 「안전투자 혁신사업」 설비 도입을 위한 착수금 신청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오니, **원활한 사업진행**을 위해 **준수사항** 및 **제출서류** 등을 **숙지** 바랍니다.

① (착수금 신청) 보조지원 결정 후 착수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

- [대상] 직접보조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**투자기업**(할부·리스는 신청 불가)
- [범위] 지급 예정 보조금의 70% 이내(사업주 자부담금 제외)
  ※ 착수금 지급 후 사업취소 등 발생하는 경우 지급된 착수금 환수
- [방법] 종합지원시스템(anto.kosha.or.kr) → 사업관리 → 착수금 신청(서류 제출)

<착수금 신청 시 제출서류>

구분	위험기계 교체 분야		위험기계 교체 • 공정 개선 분야			
사업구분	이동식크레인	고소작업대	리프트	노후 위험기계	뿌리공정	고위험3대업종
제출서류	1. 지급보증보험증권 - 피보험자: 공단본부(122-82-04898) - 가입금액: 보조결정금액 - 가입기간: 2027.12.31. 2. 입금 희망 통장 사본 - 투자기업 또는 투자기업 사업주 계좌		1. 지급보증보험증권 - 피보험자: 공단본부(122-82-04898) - 가입금액: 보조결정금액 - 가입기간: 2029.12.31. 2. 입금 희망 통장 사본 - 투자기업 또는 투자기업 사업주 계좌			

※ 지급보증보험증권은 ①착수금 신청(착수금 신청금액), ②투자완료 확인요청(보조결정금액) 시 제출

② (착수금 지급) 매월 1회 또는 2회

- 공단 보조금 지급 시기에 따라 착수금 지급신청 계좌에 일괄 지급

③ (투자완료 확인평가) 기한 내(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) 설비도입 후 확인요청 시

- 투자기업 개선내용 확인 및 소요금액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된 보조금 지급
  ※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잔여 보조금 지급

덧붙임	착수금 신청 방법

종합지원시스템(anto.kosha.or.kr) → 사업관리 → 착수금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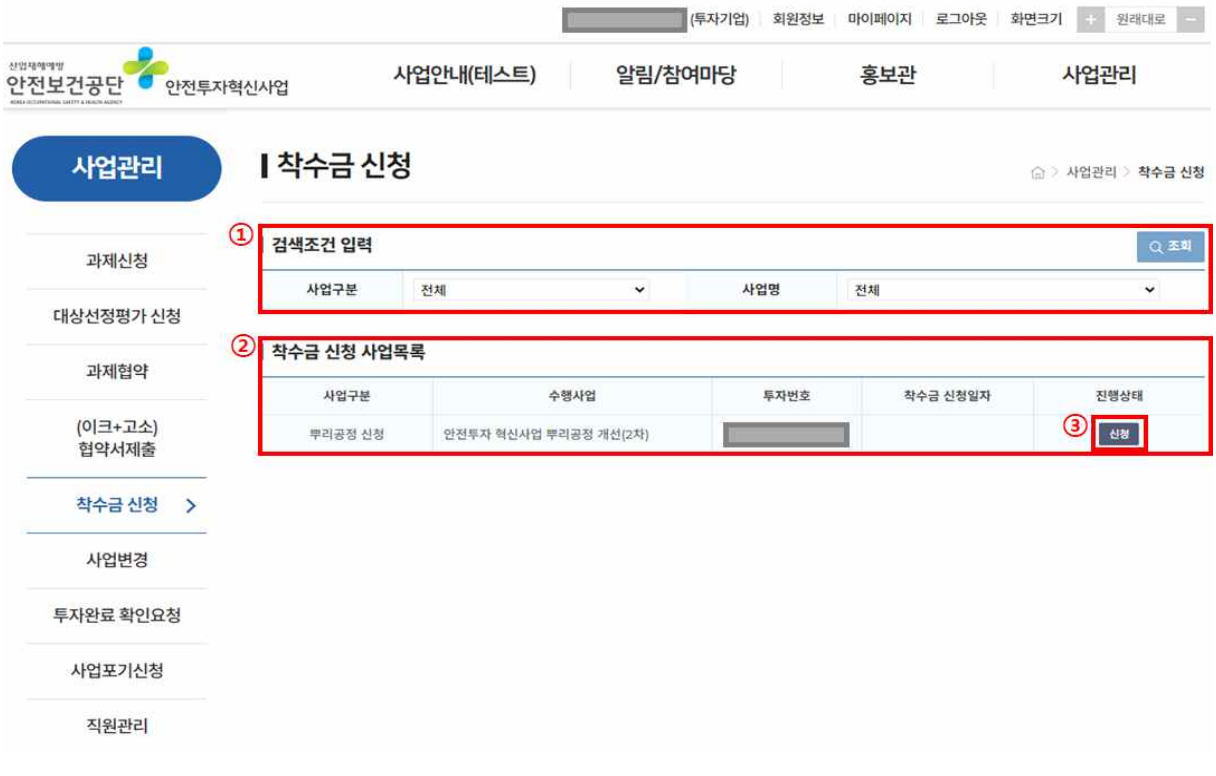

검색조건 입력 및 조회 → 착수금 신청 목록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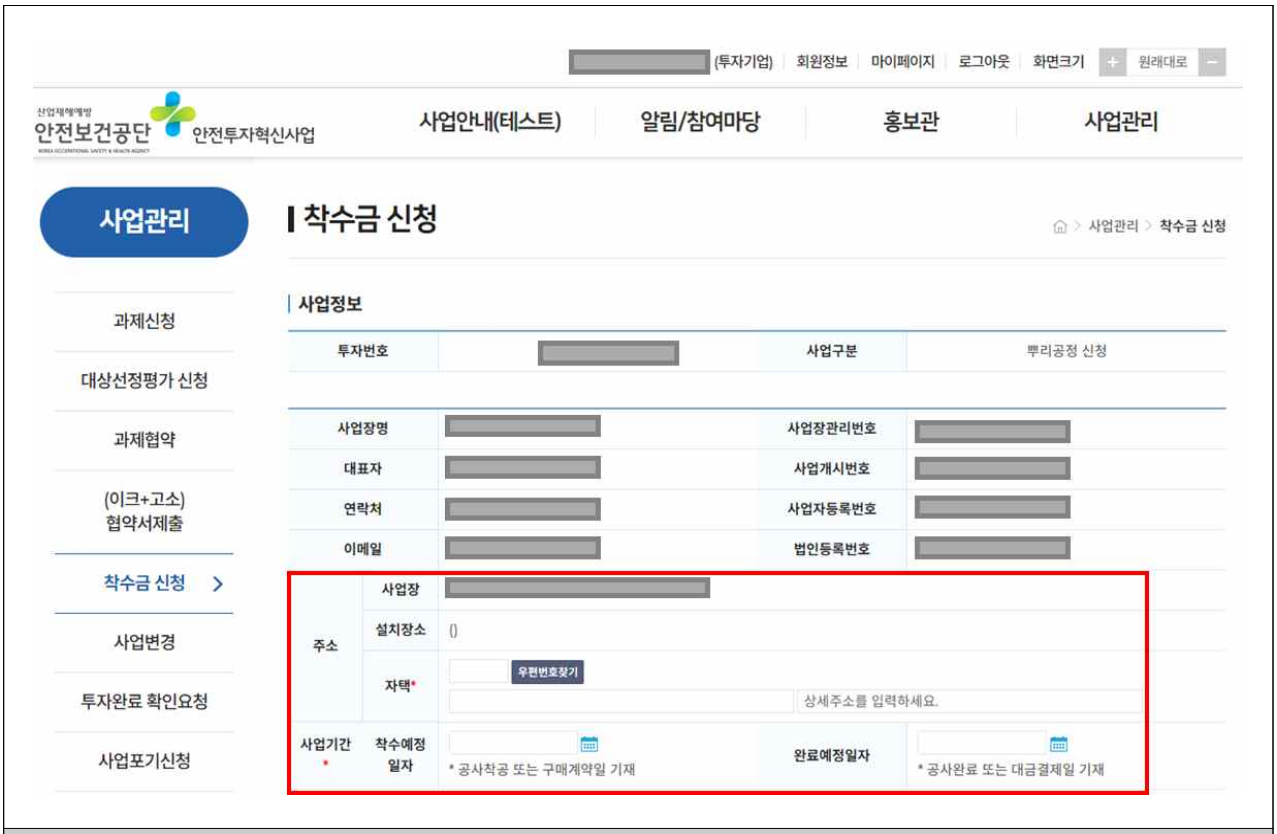

착수금 신청서 작성 → 사업정보 확인 및 정보 입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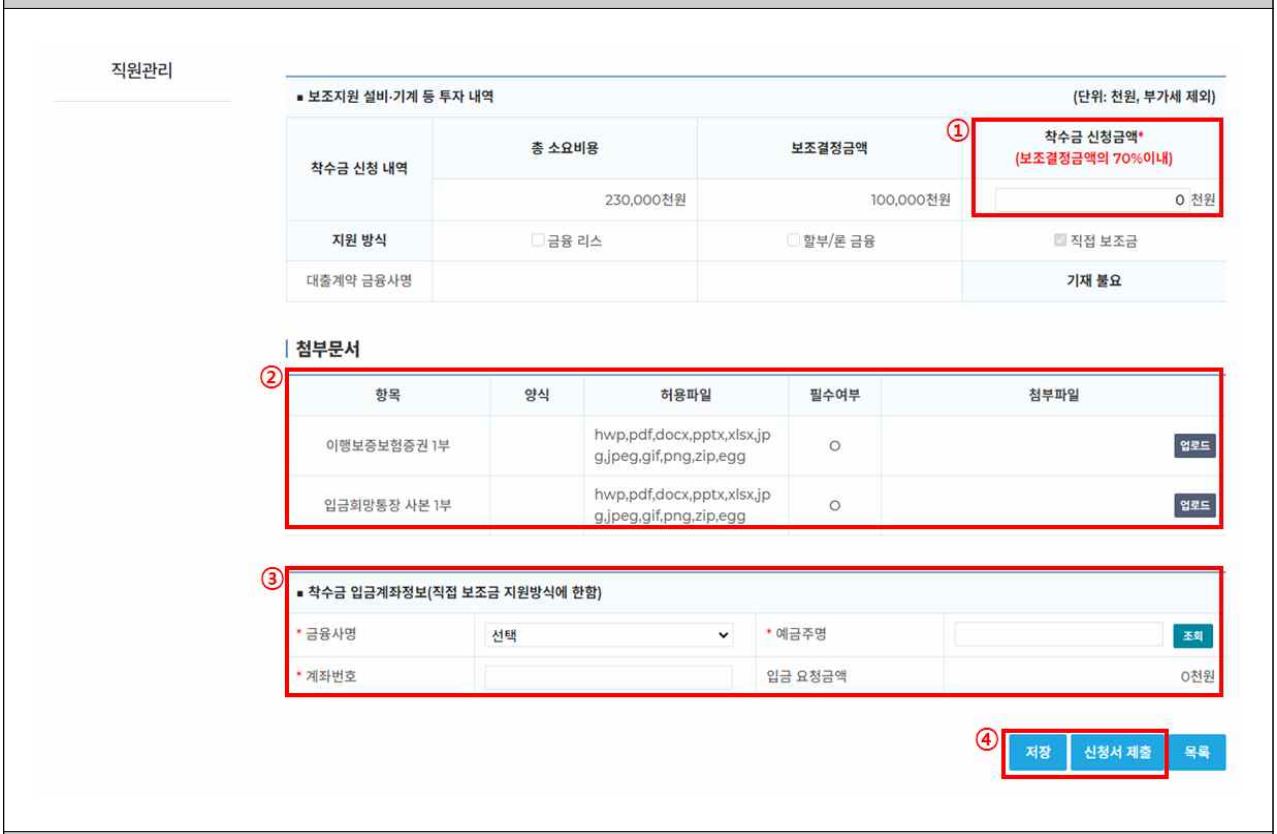

착수금 신청금액 입력 → 제출서류 첨부 → 지급계좌 입력 → 신청서 제출